

마스크 안 쓰니 의사도 걸렸다...응급실·환자 이송 '대란'

9명 확진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로 광주 응급실 포화상태 입원 환자·보호자 상당수 이동 불가피 속 병원구하기 전쟁 의료진 회식자리 대화 등 원인 추정...마스크 중요성 부각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방역 수칙과 감염 예방 수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진조차 마스크를 벗고 집단 회식을 하다 감염됐다는 말이 나오면서 마스크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마스크 불패(不敗)(?)=전남대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마스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남대병원에서는 신진외과 전공의가 546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 현재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사(4명), 간호사(2명), 환자(2명), 보호자(1명) 등 병원 내 모든 직군이 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철저한 감염 예방·관리를 유명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조차 대규모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단, 지난 12일 상당 시간 마스크를 벗고 이뤄진 신진외과 회식 자리가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진조차도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말이 나오거나 하면, 중증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이 보건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집단 회식자리를 갖는 등 안이하게 행동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구 보건당국 관계자는 "여러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식사시에도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포화, 응급환자 어디로=전남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지역 응급의료상황도 비상상태다. 1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구조구급상황반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응급실이 13일부터 운영을 중단하면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만 이송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조선대병원은 14일부터 환자들로 발 딛을 틈 없을 정도로 복잡했고 급기야 병원측은 중증·중증의상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들 경우 2차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등의 중환자와 추락·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

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남대병원을 제외하면 조선대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로서는 환자 상태를 감안, 최대한 나눠 포화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환자들, 옮길 병원 찾기 대란=전남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느닷없이 치료 병원을 찾아 나서느라 비상이다. 병원측이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당장, 전남대병원측은 16일까지 진행중인 환자·보호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과 다른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5인실 이상 다인실에 환자와 보호자 등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점, 입원 환자들이 고령인 점 등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중증 환자를 제외한 전남대병원(1156병상) 입원 환자·보호자 상당수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의료진 권고를 받은 보호자들은 옮겨갈 병원을 알아보느라 주말 내내 전화기를 돌려야 했다. 의료계에서는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갑자기 몰릴 경우 옮길 병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대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2차 병원들 사이에서도 "전대병원에서 얼마나 환자가 넘어올지 몰라 병상이 충분하다는 확인을 하기 곤란하다"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관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종사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잇단 위법 판결에도...검찰 정보공개 여전히 외면

내부 규칙만 앞세워 기계적 법 적용
올들어서만 같은 사례 3차례나 위법

검찰이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검찰보존사무규칙만을 내세워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했다가 '호력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기계적으로 내부 행정규칙만을 앞세워 적용하고 있는 검찰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호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A씨의 사건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본인이 고소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에 따라 검찰이 '불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규칙이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비

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은 법무부령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수사방법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A씨의 목포지청을 상대로 한 다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제외한 해당 수사보고서의 경우 통상적 수사방법과 절차에 기한 수사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 날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 2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도 A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낸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해당 사건 정보는 서류의 문서명, 작성일자, 진술자명 또는 작성자명 등이 적힌 사건기록 목록에 불과할 뿐 비공개로 할 특별한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공개대상 정보를 '실질적 내용을 살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법 집행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날 하루에만 검찰사무보존규칙을 내세워 비공개 처분이 이뤄졌던 3건의 사건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것으로, 올 3월 이후로는 벌써 5차례에 이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인 김정희 변호사는 이와관련,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스스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검찰의 행정편의주의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불허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 검찰보존사무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검찰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검찰보존사무규칙(20조 2)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제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의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무수행 곤란 이유 송치외견서 비공개 위법' (광주일보 5월 6일 6면) 기사와 관련,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 배제 놓고 논란

독직폭행 혐의로 20일 첫 재판 대검 검찰부장 이의제기 등 '공방'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직무 배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검이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따른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대검 검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등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오는 20일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며 이의를 제기한 대검 검찰부장의 글까지 SNS에 올라오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검찰 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올렸다. 앞서, 대검은 최근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따른 직무배행정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 검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8조 3항)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과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검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후 검찰부장은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배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당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0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